『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』
공공기관 위탁(재계약) 동의(안)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은주 교육청소년과장)

가. 동의를구하는 사항

○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·관리하는 “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” 의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(재계약)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제안사유

○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·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관인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(재계약)하여 시설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제안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(사무의 위임 등)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제3항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○ 「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)

○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의회 동의)

3. 위탁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

나. 위탁시설 개요

○ 위　　치 :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

○ 규　　모 : 부지6,996.19㎡, 연면적8,275.71㎡(지하1층~지상4층)

층수	면적(㎡)	용도	주요시설	비고
4층	771.26	청년창업플랫폼	청년창업 일자리플랫폼	
3층	1,089.19	문화의집	다목적강당, 음악실, 댄스실, 밴드음악연습실, 휴게공간 등	
2층	1,048.37	문화의집	북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, 스튜디오(뷰티&이미지, 메이킹, 영상회의, 촬영・방송)	
1층	787.08	사무실	청소년재단사무실, 진로진학사무실, 포항청춘센터사무실	
지상소계	**3,695.90**			
지하1층	4,579.81	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	공용주차 118면	
지하소계	**4,579.81**			
옥외	3,179.90	도시숲광장	시민쉼터, 휴게공간	

다. 위탁 개요

○ 위탁방법 : 공공위탁(재계약)

○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

○ 위탁비용 :　820,611천원/년 **※ 2026년 본예산 기준**

○ 수탁선정 방식 : 수의계약

○ 수의계약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5

○ 수탁기관 :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

○ 위탁사무 및 위탁범위

-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(도시숲, 주차장 등)
- 포항시 북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수행
- 청소년의 정보·문화·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
-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- 청소년시설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-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
- 창의과학 및 메이커(크로마키 스튜디오, 3D프린터, 코딩) 프로그램 운영
- 그 밖에 포항시가 위탁하는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라. 인력 운영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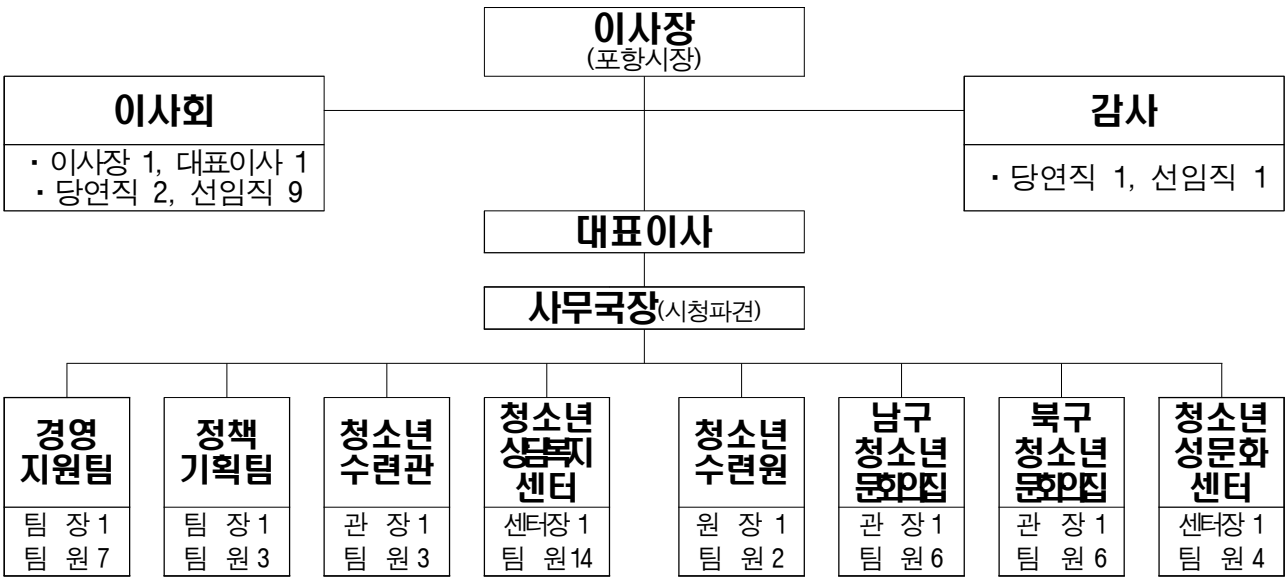
○ 조직구성 : 1개팀(관장1, 팀원6)

○ 인력구성

(단위:명)

구 분	합 계	5급 (관장)	6급	7급	업무직	국도비 보조사업인력 (정원외)	비고
인원	7	1	1	0	2	3	

※ 포항시 청소년재단 직제 및 기구표



☞ 청소년상담복지센터(10), 남구청소년문화의집(3), 북구청소년문화의집(3), 청소년성문화센터(5) 국비사업인력 포함

4.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

○ 근　　거 :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)

○ 검토대상 :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

○ 검토내용

검 토 기 준	검 토 내 용
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•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공익성에 기반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공기관 위탁 적정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	•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며, 「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, 지역 청소년 대상 창의활동 및 진로탐색 등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성이 높음 •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정책과 복지증진에 힘쓸 수 있고, 향후 지역 청소년 사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
③ 경제적 효율성	•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조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, 특히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관한 인적·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④ 수탁·대행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• 문화공간, 창의활동지원, 복지 등 관련 사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, 유사사무 수행 실적 다수, 사업 운영 노하우 축적으로 기술 활용 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성이 높음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•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정량·정성적 성과 측정 가능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• 관련 조례, 위탁계약의 체결, 지침시달,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시 실적관리 등 방법으로 관리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
⑦ 책임행정의 보장성	• 2018년부터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 성과물 활용과 후속 사업 발굴 등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 가능

○ **검토결과** : 적정(평균점수 90.7점)(총무새마을과-20596(2026.5.27.)

-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위탁하는데, 재단의 풍부한 프로그램 경험과 검증된 시설 관리 능력이 재계약 기준에 적정한 바,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(재계약)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5. 위탁운영 추진계획

○ 위탁운영 계약 체결 : 2026. 12 예정

○ 위탁운영 개시 : 2027. 1.

6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장준호)

○ 본 동의안은 「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」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(재계약)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**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**은

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,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, 댄스연습실·음악연습실·다목적강당 등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고, 자치동아리 운영 및 청소년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○ **먼저, 운영 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,**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,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.

○ 다음으로, **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,**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, 업무의 풍부한 경험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현행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,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, 평균점수 90점 이상으로 관리 및 운영 수준이 우수하여 (재)포항시 청소년재단과 위탁(재계약)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**검토결과,**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, 업무의 풍부한 경험으로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**앞으로도** 기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, 다른 청소년시설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.

7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8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